

토지매입업무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표(제29조제2항관련)

보상액	위탁수수료의 요율	비고
30억원 이하	20/1,000	1. 평가수수료·측량수수료·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2. 위탁업무의 내용, 위탁사업의 성격,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. 3.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기준요율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.
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	6천만원+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/1,000	
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	1억6천2백만원+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/1,000	
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	2억5천2백만원+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/1,000	
300억원 초과	4억4천7백만원+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/1,000	